의안번호
제720호

- 울산광역시중구 아동·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·제출자 : 2009. 9. 30(수)·권순정 의원외 5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9. 10 6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9. 10. 12(월)

2. 제정이유

○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·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를 설치·운영하고, 아동·여성보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 아동·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에 대해 규정함 (안 제3조, 제4조)

나. 울산광역시중구 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·운영하며 지역연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, 회의 개최 및 의결,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)

다. 구청장은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홍보, 협력체계의 구

축에 노력하도록 규정함 (안 제11조)

라.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사업비 지원과 출석위원에게 수당·여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관련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 (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)

4. 근거법규

가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
나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
다.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
라.「아동복지법」제4조

5. 담당부서 의견(사회복지과)

○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, 여성권익증진사업 지침 등에 의해 현재 수행중인 사무이며, 법률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법률과 중복적인 규정임.

6.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

○ 서울 양천구, 광주 광산구, 대전 동구, 충북 청주시 등 4개자치단체에서 조례 시행하고 있음

7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동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

- 아동·여성 폭력의 사전 예방과 위기 발생시 긴급구조 등 공동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간 지역연대를 설치·운영하고

- 이들의 보호를 위한 각종시책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는 사항과 공동주택, 어린이 놀이터,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에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

○ 개별법령에 따라 해당부서 및 관련기관, 단체 등에서 아동·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

○ 본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과 여성의 보호시책을 보다 폭넓게 추진하여 피해자를 최소화 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련 법 령(발췌)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09.11.9] [법률 제9668호, 2009.5.8, 일부개정]

제4조 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5.8>

1.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
2.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,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
4.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
5.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가정폭력의 예방·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(經費)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10.17]
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08.6.13] [법률 제9110호, 2008.6.13, 일부개정]

제3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1997.8.22>
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시행 2008.12.19] [법률 제9166호, 2008.12.19, 일부개정]

제3조 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,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 "성매매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성매매,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
2.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(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)의 설치·운영

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[전문개정 2008.12.19]

아동복지법

[시행 2008.12.14] [법률 제9122호, 2008.6.13, 일부개정]

제4조 (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
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

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,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.

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유무,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신설 2006.9.27>